

보상위원회 운영규정

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보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 한)

-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수행한다.
 1. 대표이사·등기임원(감사, 독립이사를 제외한 등기이사를 의미함, 이하 동일)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
 2. 대표이사·등기임원에 대한 보상체계 및 정책
 3. 주주총회에 제출할 이사 보수의 한도
 4. 위원장의 선임
 5. 기타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관련 법령 및 이사회 규정 등에 의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4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며, 임기 만료 기타의 사유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 만료·사임 등으로 제2항의 구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는 잔여 이사 중에 위원을 선임하고, 잔여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 중에서 위원을 선임한다.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회 의)

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주간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이사 보수의 한도
- ② 대표이사·등기임원에 대한 보상체계
-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10조 (결의방법)

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

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2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통지를 받은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13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및 그 내용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14조 (간 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15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